##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23 발의연월일: 2020. 8. 3.

발 의 자:고용진·고영인·김영배

김진애 · 남인순 · 노웅래

맹성규 • 박범계 • 박성준

신동근 • 안규백 • 이상직

이탄희 · 한정애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함.

현행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빚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수 있기 때문임.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정책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의2.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
	<u>업</u>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